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6. 8 선고 2020가단1587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781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6. 8 선고 2020가단1587 판결

전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11.

판결 선고 2021. 6.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태양광 발전소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9. 20.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소 2기(D, E)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한 인허가 대관업무, 자금대출, 설계 및 시공 등을 도급(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주었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5%)	36,850,000원	14,740,000원	태양광발전 허가증 발급일 지급
1차 중도금(25%)	177,650,000원	90,365,000원	
2차 중도금(40%)	286,000,000원	140,140,000원	모듈/인버터/구조물 도착 3일전 지급
3차 중도금(20%)	143,000,000원	70,070,000원	모듈/인버터 공사 후 7일 내 지급
잔금(10%)	71,500,000원	35,035,000원	인수성능(안전공사) 시험완료 후 7일 내 지급
합계	715,000,000원	350,350,000원	

공사계약 일반조건1) 제17조("갑"의 계약해제)

① "갑"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 피고는 2019. 9. 24.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계약금에 관해 F 주식회사로부터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51,590,000원", 보험기간 "2019. 9. 20.부터 2020. 5. 31.까지"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9.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계약금으로 51,590,000원(= D 36,850,000원 + E 14,740,000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했다.

마. 원고는 2020. 4. 22. 당진시장으로부터 D, E의 발전사업허가증을 받았다.

바. 피고가 2020. 6. 24. 원고에게 보낸 D, E 예정공정표에는 이 사건 각 공사 착공예정일이 "2020. 7. 20.", 준공예정일이 "2020. 9. 19."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사. 원고는 2020. 7. 21. 피고에게 '피고가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2020. 5. 31.까지 이 사건 각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위 통지는 2020. 7. 22. 피고에게 도달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공사를 위해서는 ① 당진시청으로부터 발전사업허가, 공작물축조신고허가(개발행위허가), ② 한국전력공사와 선로계통 및 전력수급계약(PPA) 체결, ③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 ④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설비등록을 마쳐야 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는데, 원고는 2020. 4. 22. 당진시청으로부터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업무에 미숙한 피고가 D, E를 동일한 사업주 명의로 신청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와 선로계통 및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피고가 착공예정일인 2020. 7. 20.까지 이 사건 각 공사를 개시하거나, 준공예정일인 2020. 9. 19.까지 이 사건 각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것이 명백해졌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해제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51,5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원고가 당진신청으로부터 발전사업허가증을 발급받은 2020. 4. 22. 이후에 피고에게 1차 중도금 268,015,000원(= D 1차 중도금 177,650,000원 + E 1차 중도금 90,36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사실, 이 사건 각 공사를 위해서는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와 선로계통 및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해야 했던 사실, 원고는 D, E의 사업자 명의를 동일하다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와 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실,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공사가 착공되거나 준공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사의 착공예정일이 2020. 7. 20., 준공예정일이 2020. 9. 19.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의 계약해제의사가 표시된 2020. 7. 21.자 내용증명이 2020. 7.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와의 선로계통 및 전력수급계약 체결 요건을 숙지하지 못해 원고와 한국전력공사의 계약체결이 지체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가 착공예정일인 2020. 7. 20. 착공되거나, 준공예정일인 2020. 9. 19.까지 준공되지 못할 것이 명백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해제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의 착공 및 준공이 지연된 것은 원고가 당진신청으로부터 발전사업허가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 중도금의 지급을 지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한다.

원고가 "태양광발전 허가증 발급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의 1차 중도금 268,01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20. 4. 22. 당진시장으로부터 D, E의 발전사업허가증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가 제때에 한국전력공사와 선로계통 및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1차 중도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공사는 예정일에 착공되거나 준공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1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2020. 6. 24.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예정공정표에는 이 사건 각 공사의 착공예정일이 "2020. 7. 20.", 준공예정일이 "2020. 9. 19."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해제통보를 받기 이전에 원고에게 1차 중도금의 지급을 독촉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의 2020. 7. 21.자 해제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0. 7. 22.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금 51,59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인 2019. 12. 20.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이랑

1)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지칭한다.